

소수주주권에 대한 이해

- 주주제안제도를 중심으로 -

정 문 호 본회 전문위원

jmh@kica.or.kr/2087-7158

I 서언

최근 주식투자인구가 늘어나고 이른바 소액주주운동이 널리 알려지면서 주주제안권을 비롯한 소수주주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주제안권(Shareholder Proposal Right)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실제로 주주총회와 관련한 주주제안권의 행사와 주주명부열람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가 종전에 비해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수주주권이 행사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우선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관련법리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침체장세에서 사모펀드와 투자자클럽 등의 주도하에 투자수익의 보전 등 차원에서 주주제안권 행사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소수주주권의 법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업무처리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수주주권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 주주제안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II 소수주주권 개관

(1) 의의

주주는 회사에 대해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주주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주의 권리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없다.

이러한 주주권은 회사의 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행사하는 공익권과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편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 자익권으로 구분된다.

또한 주주가 단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단독주주권과 일정한 수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소수주주권으로 분류된다.

소수주주권은 다수결원칙 하에서 다수파주주의 전횡을 막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단독주주권으로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개별 주주에 의한 주주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자익권은 모두가 단독주주권이고, 공익권도 원칙적으로는 단독주주권이지만 소수주주권인 경우도 있다. 예컨대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이사해임청구권, 유지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은 소수주주권으로 하고 있지만 권리의 성질상 지나치게 영세한 주주에게는 인정할 실

익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규모자본과 주식분산 등으로 현실적으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법에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소수주주의 지분요건을 크게 완화하였다.

(2) 내용

상법은 비상장회사에서의 소수주주권에 대해서 일정한 지분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장회사 특례에서는 소수주주권의 활성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분요건을 크게 완화하면서 소수주주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요건(6월)을 추가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이 비상장회사는 지분요건만 규정하고 있지만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청구권은 지분요건만 규정하고 다른 소수주주권은 지분요건과 보유기간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분요건을 계산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수 기준(주주제한권, 집중투표청구권)과 총발행주식수 기준(이외의 다른 소수주주권)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법상 일반기업과 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 비교〉

소수주주권	일반기업	상장기업
대표소송권 (§324, §403, §415, §424의2, §467의2, §542)	1%	6개월 이상 0.01% 이상 보유자
이사의 위법행위 유치청구권(§402)	1%	6개월 이상 0.05% 이상 보유자 (0.025%)
회사의 서류·장부 등에 대한 열람청구권(§466)	3%	6개월 이상 0.1% 이상 보유자(0.05%)
위법행위를 한 이사·감사·정산인에 대한 해임 청구권(§385, §415, §539)	3%	6개월 이상 0.5% 이상 보유자 (0.25%)
주주제한권(제363조의2)	3%	6개월 이상 1% 이상 보유자(0.5%)
집중투표청구권(제382조의2)	3%	1% 이상 보유자
주주총회 소집청구권(§366)	3%	6개월 이상 1.5% 이상 보유자
법원에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 청구권(§467)	3%	6개월 이상 1.5% 이상 보유자

* 상장기업에서 ()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주주제한권과 집중투표청구권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

사실상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권의 지분요건을 크게 완화한 것은 행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면 합리적이지만 그 지분요건을 지나치게 세분화한 것은 오히려 업무의 혼란만 초래하고 그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지분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전제로 하는 것과 발행주식총수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러한 구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3) 기타

주식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뜻하며, 2인 이상의 공동행사 가능하고 위임장취득본도 행사할 수 있다.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참고〉 실질주주 증명서제도

주주가 소수주주권 등의 행사를 위하여 보유기간요건의 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실질주주증명서는 회사에게 주주명부기재와 동일효력이 인정되며, 실질주주증명서는 성명, 주식수, 주주권 내용, 행사기간 등을 기재한다. 실질주주증명서의 행사기간중에는 주식의 처분이 제한되며, 고객계좌부, 예탁자 계좌부에 처분제한 사실이 기재된다.

Ⅲ 주주제한제도

(1) 개요

주식회사에서 지배주주는 경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분산된 일반주주는 경영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영상의 투명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경영에서 소외된 일반주주들에게 회

사의 의사결정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경영진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1997년의 개정증권거래법에서 먼저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제안제도를 신설하였고 1998년의 개정상법이 제363조의 2에 주주제안권을 신설하여 모든 주식회사가 주주제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즉 상법상 주주총회 안건은 이사회에서만 제안이 가능하므로 군소 주주는 소수주주권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요구시 이외에는 안건 제안이 불가능한 바, 주주총회에 대한 군소주주의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어서 군소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2) 행사요건

① 제안권자 요건

상법상 주주제안권자를 3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비상장회사에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일반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대규모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일정비율 이상(일반상장회사 지분율의 1/2)을 소유한 주주가 제안을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점은 상장회사에서 6개월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주가 상법 일반규정에 의해 지분요건만 충족되어도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일부 부정하는 판례가 있지만 최근 판례는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주주제안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관련판례

〈판시사항〉

상장회사 주주가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상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일괄하여 상법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례규정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상법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원론적 의미의 규정이므로, 상법 일반규정의 배제 여부는 특례의 각 개별 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하여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1. 4. 1. 자 2011라123 결정)

② 제안시한 및 절차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이사회에 제안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일에 대한 일반적 예측이 가능하므로, 상법도 정기총회에서 다룰 안건의 제안은 직전 연도의 정기총회일에 해당하는 날 6주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총개최일 2주전 주총소집통지, 안건준비 등 주총개최를 위하여 약 6주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주주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2009년 개정상법은 기업경영의 IT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주가 기존의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제안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의 설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주주제안권의 종류

주주제안이란 주주가 이사회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를 요구하는 것인데, 의제제안권과 의안제안권 두 가지가 있다. 즉 주주가 총회의 목적사항을 직접 제안하는 것(의제제안, 예를 들어 이사선임 안 등)과 이사회에서 정한 목적사항에 구체적인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의안제안, 예를 들어 ○○○을 이사로 선

임하자는 안 등)이다.

④ 주주제안의 실무처리

주주제안권의 행사가 있을 경우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의 제안을 무시하여 총회소집의 통지·공고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고 의제로 상정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결의취소의 사유가 된다.

⑤ 주주제안의 제한 (거절사유)

상법은 회사가 주주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주주의 제안내용이 법령·정관에 위반한 경우, ② 주주의 제안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상법 제542조의2 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만 해당함), ㉤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실무상 유의점

금년도 주총에서도 수많은 주주제안이 있어 실무자의 주주총회 업무를 매우 복잡하게 하였다. 매년 의례적인 주주제안이거나 주총의안도 아닌 무상증자 같은 법에 어긋나는 주주제안 등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제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주제안이 제기된 경우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간단히 요약하면 주주제안자와 소통하여 실질주주명서 등을 통해 지분요건과 보유기간요건을 확인하고, 제안내용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소집통지서에 포함시켜 주주에 통지하고, 의안상정과 설명기회 부여, 표결처리하면 충분하다.

이들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자들의 주주제안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名士 名言



“ 회의시간 3분의 2는 ‘듣는 시간’ ”

- AG. 레플리 / P&G CEO 겸 회장 -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부하직원들의 적극적, 자발적 변화와 서로간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상사는 자신 스스로 그런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